

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조 (정원의 총수) 중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군 본청 : 228명
2. 의회사무과 : 11명
3. 직속 기관 : 114명
4. 사 업 소 : 22명
5. 읍.면 (그 출장소를 포함한다) : 322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1995. 5. 18.

제출자 화순군수

1. 제안 이유

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 제 21조(정원의 규정)이 개정되어 의회사무과에 두는 사무직원과 화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를 화순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관리하며
- 군 본청 1명 증원은 지방자치단체장(지방정무직)의 정원임
- 화순군 도곡온천개발사업소 설치에 따른 사업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정원이 승인되어 사업소에 두는 정원을 증원코자함.

2. 개정 근거

- 지방자치법 제 15조, 제 103조
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 21조

2. 주요 골자

- 군 본청란에 지방정무직 1명을 증하고
- 정원의 총수란에 의회사무과 11명 삽입하며
- 화순군 도곡온천개발사업소 정원승인 인원 6명을 증원한다.

검 토 보 고 서

□ 조 례 명

-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□ 주 요 내 용

- 정원의 총수 (안 제 2조) : 총 697명
 - . 군본청 : 227명 → 228명 (군수 : 지방정무직)
 - . 의회사무과 : 11명 (신설)
 - . 사업소 : 16명 → 22명 (도곡온천개발사업소 정원 - 6명 중)
 - 지방토목 또는 건축 6급 1
 - 지방행정 7급 1
 - 지방토목 또는 건축 8급 1
 - 지방기계원, 전기원 8등급 각 1
 - 지방 사무보조원 10등급 1

□ 개정 사유 (필요성)

- 현행 군수의 직급 (국가 4급)이 '95. 6. 27일 지방자치단체장 선출로 인해 '95. 7. 1일부터 지방정무직으로 변경되며
- 정원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의회사무과 정원을 화순군 정원의 총수로 관리하고
- 도곡온천개발사업소 설치에 따른 정원이 내무부에서 승인됨에 따라 이에 따른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 필요

□ 검토 결과(의견)

- 본 조례의 개정(안)은 지방자치법 제 103조 (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),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(대통령령) 제 21조 (정원의 규정)가 개정 공포되었고
- 도곡은천개발사업소의 기구설치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며,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